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문화체육관광부 (영상콘텐츠산업과)
연 월 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영화상영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로 영사자격자를 확대하고, 선량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또한 비디오물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따라 등급분류 제외 대상을 넓히고 등급표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에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 상영이 가능한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기준을 마련함(안 제21조제2항)

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 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세부 기준을 마련함(안 제22조제2항)

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경우와 같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정하고자 함(안 제23조, 별표2)

또한, 뮤직비디오, 숏폼 콘텐츠 등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물의 경우 등급표시, 내용정보 표시 등을 온라인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모두 표시하

는 데 애로가 있어, 등급표시만 온라인비디오물의 초기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온라인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을 간소화하고자 함(안 제27조, 별표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34466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21조제2항”을 “제21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 분야 교육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.

“제22조”를 “제2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.

1.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
2.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.

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3호”를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3의2. 스포츠 경기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. 다만,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은 제외한다.

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과 제3항의 세부적인 표시 방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[별표 3]의 제4호 중 “제2호 및”을 “제1호 내지”로, “모바일 영상물 중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”를 “영상물 화면에”로, “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에 갈음해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”를 “다음 각 목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는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.

나. 5분 미만의 영상물이거나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물이 연속하여 하나의 영상물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표시를 제외한 제

1호의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는 다른 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다. 다만,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물이 연속하여 하나의 영상물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청제공한 첫 영상물 화면에만 제2호의 등급표시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영사 자격자) ①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으로 한다.	제21조(영사 자격자) ①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② <u>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 분야 교육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영사 분야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한다.</u>
② 법 제44조 단서에서 “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”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한다.	③ (현행법 제2항과 같음)
제22조(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)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제22조(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)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< 신 설 >	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.</u>
	1.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

	<u>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</u> 2. <u>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 입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</u>
제23조(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) ①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	제23조(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.</u>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국내에서 교육·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. <u>다만,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.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. < <u>단서 삭제</u> >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3의2. 스포츠 경기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. 다만,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은 제외한다.
4. 5. (생 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②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.	②----- ----- 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7조(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)	제27조(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2항과 제3항의 세부적인 표시 방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[별표 2]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서 제외되는 비디오물(제23조제1항제3호관련)	[별표 2]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서 제외되는 비디오물(제23조제1항단서관련)
[별표 3]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(제27조제3항 관련)	[별표 3]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(제27조제3항 관련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영상물 중 제2호의	4.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상물 화면에 표시가 불

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에 갈음해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.	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가.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는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.
	나. 5분 미만의 영상물이거나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물이 연속하여 하나의 영상물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표시를 제외한 제1호의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는 다른 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다. 다만,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물이 연속하여 하나의 영상물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청제공한 첫 영상물 화면에만 제2호의 등급표시를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32